<붙임 8>
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

구 분	현 재	이전 후
위 치	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8층	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
이전일자 및 그 사유	2018.04.30 / 본점 이전	
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
■ 첨부서류

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[제출용]

등기번호	300924
등록번호	110111-3009241

상 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	2004.07.09 변경 2004.07.09 등기
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10층(여의도동, 에스케이증권 빌딩)	2018.04.30 변경 2018.05.02 등기

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consus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2012.06.21 변경 2012.06.25 등기

1주의 금액 금 5,000 원	. . 변경 . . 등기

발행할 주식의 총수 10,000,000 주	2017.06.29 변경 2017.07.13 등기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 4,940,310 주 보통주식 4,940,310 주	금 24,701,550,000 원	2018.03.03 변경 2018.03.05 등기

목 적

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
1. 집합투자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2. 투자매매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3. 투자중개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4. 투자자문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5. 투자일임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6. 신탁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7. 일반사무관리회사업 <2009.06.26 변경 2009.07.09 등기>

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및 제1항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영위할 수 있다.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
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
1. 부동산 매매, 임대 및 개발업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2. 국내외 경제, 경영, 자본시장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 및 동 조사자료의 출판 및 판매 업무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3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, 상표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**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의 발급확인 메뉴**에서 **발급확인번호**를 입력하여 **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112050605450104001510081100422190070134161414031911 발행일:2018/05/04

발급확인번호 9248-AASK-GKWX

등기번호	300924

4.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.판매업무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5.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6.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<2009.06.26 추가 2009.07.09 등기>

임원에 관한 사항

~~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~~
2007 년 05 월 18 일 중임 2007 년 05 월 23 일 등기
사내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
2010 년 06 월 25 일 중임 2010 년 07 월 01 일 등기
2013 년 06 월 25 일 중임 2013 년 06 월 28 일 등기
2016 년 06 월 29 일 중임 2016 년 07 월 04 일 등기

~~대표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34-2 하이츠빌리지 104-201~~
2007 년 05 월 18 일 중임 2007 년 05 월 23 일 등기
2010 년 06 월 25 일 중임 2010 년 07 월 01 일 등기
~~대표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40번길 11, 104동 201호(궁내동, 하이츠빌리지)~~
2013 년 06 월 25 일 중임 2013 년 06 월 28 일 등기
~~대표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, 13동 1107호(서초동, 삼풍아파트)~~
2014 년 02 월 07 일 주소변경 2014 년 04 월 09 일 등기
~~대표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40번길 11, 104동 201호(궁내동, 하이츠빌리지)~~
2014 년 05 월 13 일 주소변경 2014 년 05 월 27 일 등기
대표이사 김영재 470512-*******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, 13동 1107호(서초동, 삼풍아파트)
2015 년 12 월 31 일 주소변경 2016 년 01 월 05 일 등기
2016 년 06 월 29 일 중임 2016 년 07 월 04 일 등기

감사 송기문 490114-*******
2012 년 06 월 21 일 취임 2012 년 06 월 25 일 등기
2015 년 06 월 25 일 중임 2015 년 06 월 29 일 등기

사내이사 박수희 640320-*******
2016 년 06 월 29 일 취임 2016 년 07 월 04 일 등기

사내이사 김영배 700207-*******
2016 년 06 월 29 일 취임 2016 년 07 월 04 일 등기

기타비상무이사 이종빈 681018-*******
2017 년 06 월 29 일 취임 2017 년 07 월 13 일 등기

주 식 매 수 선 택 권

1.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
(1)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정관제10조 제5항 각 호의 1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부여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. 이

등기번호	300924

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.

(2)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< 2008 년 06 월 27 일 변경 2008 년 07 월 11 일 등기 >

2008 년 07 월 10 일 착오발견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

(1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교부하되 부족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며, 그 주식의 수는 주주총회 결의시 정한다.

(2)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< 2012 년 06 월 21 일 변경 2012 년 06 월 25 일 등기 >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
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.직원으로 한다.

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.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.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< 2012 년 06 월 21 일 변경 2012 년 06 월 25 일 등기 >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

(1)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관제10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(2)정관제10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09년 12월 27일 이후로 한다.

< 2008 년 06 월 27 일 변경 2008 년 07 월 11 일 등기 >

2008 년 07 월 10 일 착오발견

1.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

(1)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
2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3)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4)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(2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등기번호	300924

2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3.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< 2012 년 06 월 21 일 변경 2012 년 06 월 25 일 등기 >

회사성립연월일 2004 년 05 월 10 일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
설립

2004 년 05 월 10 일 등기

수수료 1,000원 영수함 --- 이 하 여 백 ---

관할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 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 · 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
서기 2018년 05월 04일
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

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인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(변경,경정)된 등기사항입니다. *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**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의 발급확인 메뉴**에서 **발급확인번호**를 입력하여 **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**
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발급확인번호 9248-AASK-GKWX

112050605450104001510081100422190070134161414031911 발행일:2018/05/04